

南北合作 製品의 第3國市場 進出方案

— 美國의 原產地規程을 中心으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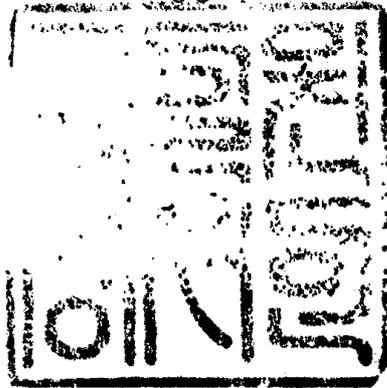
3244
3692 (322-8311)

919
2600

남북협력
남북경제협력
비밀보유
대우증권

1994

정필



책임집필

對外經濟政策研究院

國際經濟室 研究委員

韓 弘 烈

統 一 院

이 책자는 우리원의 의뢰에 의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홍렬 박사가 책임 집필한 것으로 우리원의 공식입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책을 내면서

금번 북한과 미국은 제네바 회담에서 쌍방이 무역 및 투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북한에서 생산된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이 가능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남북합작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서는 북·미 교역관계의 변화추이는 물론 미국의 원산지규정을 철저히 분석하고 이에따라 남북경제협력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원에서는 국내기업들이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 생산 제품의 미국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필요한 참고 자료를 개발·보급키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원고집필을 의뢰, 그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자에서는 최근 개정 도입된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는 한편 향후 변화가 예상되는 북·미 교역관계에 따른 기본적인 대북투자 전략을 서술하고, 부록에서는 미국의 원산지 판정기준을 품목별로 상세히 번역·게재하였습니다.

그러나 품목별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북·미 교역 관계와 품목별 원산지 판정기준에 따라 각 기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책자는 우리원이 남북경제협력을 추진하는 기업에 참고자료로 제공키 위해 마련한 것으로서 정부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밝혀드리며, 아무쪼록 대북투자 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되길 바랍니다.

1994. 11

통일원 교류협력국

目 次

I. 南北韓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3
1. 序 論	3
2. 原產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5
II. 南北韓 合作상품의 미국시장 진출과 原產地規程	11
1. 남북한 상호간의 特惠貿易	11
2. 美國의 對北韓 貿易規制	12
3. 美國의 여타 貿易制度	13
III. 美國 原產地規程의 分析	16
1. 美國 原產地規程의 概要	16
2. 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產地 判定基準의 特徵	17
IV. 對北韓 投資類型과 原產地規程	24
1. 工程分業과 最終 製品의 原產地規程	24
2. 原產地規程과 對北韓 投資戰略	28
附錄：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產地 判定基準	33

I. 南北韓 經濟協力과 原產地規程

1. 序 論

90年代 들어서면서 동구권의 몰락과 함께 舊소련의 社會主義 體制가 붕괴됨으로써 2차 세계대전 이후 國際秩序를 지배해오던 냉전의 논리가 종식되었다. 冷戰의 종식으로 인하여 舊사회주의권 경제가 市場經濟로 편입되었을 뿐만아니라 世界經濟 전반에 걸쳐서 市場經濟의 원리를 압박해오던 이념적 정치적 논리의 위력이 약화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이같은 변화는 資本主義的 經濟秩序가 그 외연을 확장하는 결과를 가져왔을 뿐만아니라 기존의 시장경제권 내에서도 市場原理를 왜곡해오던 요인이 제거됨으로써 각 경제주체간의 경쟁은 물론 국가단위의 경쟁도 이념적인 제약을 벗어나 심화하는 양상을 띄게 되었다. 이러한 경쟁의 심화는 冷戰時代에는 잠재되어 있던 국가간의 상충된 이해관계가 표출됨으로서 새로운 긴장관계를 露呈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향후 世界經濟는 개별 경제주체 및 국가의 경쟁력이 보다 정확하게 반영될 것이며 경쟁력의 향상을 위하여 經濟活動의 양상이 급격히 변화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冷戰下에서 안보적 고려하에 유지되어 오던 국방 관련 산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됨에 따라 이들은 필연적으로 민간산업화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構造的 合理化(Restructuring) 또는 世界化(Globalization) 등을 통한 경쟁력의 확보가 필수불가결해지고 있다. 뿐만아니라 이러한 움직임은 해당 산업내 여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전반적으로는 경쟁구도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國家次元에서도 경쟁력의 향상을 위한 정책의 개발에 보다 많은 자원의 투입이 시도될 것이다.

냉전의 종식과 이에 따른 世界經濟 질서의 변화는 韓半島上의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지난 반세기동안 대결적 구도하에서 냉전적 사고방식으로 남북한 문

제를 생각해오던 관행에서 벗어나 보다 건설적인 南北關係를 구축해나가야 할 시점이다. 특히 남북한의 경제관계는 그동안 정치논리에 의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남북한 경제협력관계에 있어서도 시장원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그동안 規範的 當爲性에 입각하여 단순히 협력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남북한 물자교류 및 임가공사업 등도 향후에는 경제적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한반도내의 시장 뿐만아니라 전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경제교류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내수시장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던 임가공사업도 향후에는 남북한간의 比較優位를 최적으로 결합하고 경쟁력있는 상품의 생산을 통하여 제 3국 市場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도 자연스럽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經濟協力이 經濟的 論理에 기초하여 매우 큰 타당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상당기간 냉전의 유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 각종 제도상의 제약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가장 중요한 市場으로 남아 있는 美國에서는 북한과의 교역에 상당한 제약을 가하고 있고 이는 향후에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南北韓 經濟協力事業의 결과 생산된 제품이라 할지라도 이 제품의 경쟁력과 무관하게 해외시장의 진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등장하는 쟁점의 하나로서 原產地規程을 들 수 있다. 왜냐하면 南北韓 經濟協力の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복잡성에도 불구하고 최종재화의 原產地가 어디냐에 따라서 경험의 실효성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섬유제품, 신발 등 한국이 價格競爭力을 잃어가고 있는 제품에 대하여 임가공 또는 직접투자의 형식을 통하여 競爭力 回復을 시도할 경우에도 제품의 原產地가 북한으로 판정될 경우에는 美國市場에서 무역의 규제대상으로 남거나 주로 적성국에 적용되는 높은 관세율 때문에 실질적인 교역이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상과 같은 상황이 가능한 현실을 전제로 향후 남북한 경험의 산

물로 생산되는 제품의 원활한 해외진출 특히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기하기 위하여 原產地規程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와 더불어 美國의 原產地規程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일반적인 原產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뿐만아니라 최근 개정 도입된 미국의 原產地 判定基準을 소개하고 그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미국시장으로의 진출을 염두에 두고 대북 경험을 추진하는 기업에 대한 기초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2. 原產地規程의 經濟的 意義

(1) 原產地規程의 概要

原產地規程이란 特定製品의 原產地를 결정하기 위한 諸般基準 및 節次 등을 이른다. 原產地規程은 일반적으로 特定國家가 特定製品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要件과 通關過程 등에서 상기 要件의 충족여부를 밝히는 原產地 확인절차 및 여타 부대조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原產地 判定을 위한 技術的 要件들은 특정제품이 2個國 이상에 걸쳐 생산되었을 경우 과연 어느 국가에 原產地를 부여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 현재 國際的으로 사용되고 있는 原產地 判定基準으로서의 첫째 稅番變更 基準(Change in Tariff Schedule), 둘째 附加價值 基準(Value Added Criteria), 셋째 主要 工程 基準(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을 들 수 있다.

稅番變更 基準이란 製品의 製造 및 생산과정에서 投入된 원재료 또는 부품의 稅番과 이로부터 生産된 製品의 稅番이 相異할 경우 해당공정이 일어난 國家에 原產地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附加價值 基準은 特定工程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정한 수준의 附加價值가 발생할 경우 該當工程이 일어난 곳에 原產地를 부여한다는 기준이다. 주요 공정 기준이란 生産過程上 거쳐야 하는 主要 工程을 파악한 후 가장 중요하고 實質的 變形이 일어났다고 인정할 수 있는 공정이 발생한 장소에 原產地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준들은 適用目的에 따라 달리 채택되고 있으나 대체로 혼용되거나 부속되어 사용된다. 그러나 判定基準은 特定國家가 어떤 商品의 原產地로 부여받기 위해서는 그 國家에서 該當商品의 본질상 가장 중요한 變化가 일어나야 한다는 原則에 입각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각 기준은 이러한 본질적 변화를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이상과 같은 기준들은 適用對象의 貿易措置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으며 適用對象 製品의 製作工程上의 특징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原產地規程은 그 적용목적에 따라 크게 特惠 原產地規程(Preferential Rules of Origin)과 非特惠 原產地規程(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으로 분류될 수 있다. 特惠 原產地規程이란 EC 經濟共同體, 美·캐나다 自由貿易協定(U.S-Canada Free Trade Agreement, CFTA) 등 特定國家間에 관세상의 특혜를 베푸는 貿易地帶 또는 經濟區域의 운영이나 一般特惠關稅制度(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 GSP) 등 特定國家群을 대상으로 關稅特惠를 부여하는 경우에 受惠國을 정확히 식별함으로써 非受惠國이 부당한 혜택을 입는 것을 방지하고 特惠프로그램의 실효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非特惠 原產地規程은 위와는 달리 여타 貿易政策上 商品의 原產地를 一般的으로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特定國家로부터의 특정제품에 대한 수입제한을 실시할 경우 당연히 原產地의 식별이 필요하므로 해당정책의 운영상 原產地規程이 요구되는 것이다. 反덤핑關稅 및 相計關稅의 경우에도 原產國의 식별은 물론 提訴의 대상이 된 商品의 類似商品(like products)이나 國內產業(domestic industry)의 存在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어서도 本 規程의 적용이 필요함은 자명하다. 또한 단순히 정확한 貿易統計의 作成上 原產地規程의 적용이 요구되기도 한다.

(2) 原產地規程의 경제적 효과

一般的으로 地域間 協定이 갖는 貿易轉換 效果는 관세상의 차이나 여타 비관세 장벽

의 철폐로 價格競爭力에서 域內國 製品이 우월성을 갖게 되든지, 物理的인 貿易의 흐름변경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NAFTA체결에 있어서의 關稅撤廢計劃은 域外國 製品은 상대적 價格上昇을 유발하게 된다. 이같은 효과는 數量制限 등 여타 조치와 관련해서도 동일한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價格競爭力 측면에서 두고 볼 때, 이러한 가격상의 차이가 바로 原產地規程의 차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原產地規程 그 자체는 이같은 관세혜택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原產地規程 그 자체는 貿易轉換效果를 보장하는 정상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原產地規程은 이와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정량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이는 주로 요건의 상대적 엄격성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예를 들면, 原產地判定基準에 있어서 50%의 附加價值 條件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며 또 이러한 비율의 변화가 貿易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이르는 것이다.

따라서 原產地規程의 순수한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간단한 모형을 설정하기로 한다. 우선 남북한의 협정에 따라 한반도에서 특정 제품이 생산되고 本製品이 남북한간에 거래될 시에 無關稅를 적용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alpha\%$ 의 한반도내의 部品을 사용해야 한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自國生産의 일정량인 C만큼을 한반도내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거래되기 위해서는 原產地規程을 만족시킴으로써 무관세의 혜택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가정하기로 한다. 이와 같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엄격한 가정은 비현실적인 면이 있지만 原產地規程의 순수효과만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매우 필요한 것이다.

즉, $C = X + X^*$ 단, C는 수출가능량, X, X^* 는 역내, 역외 부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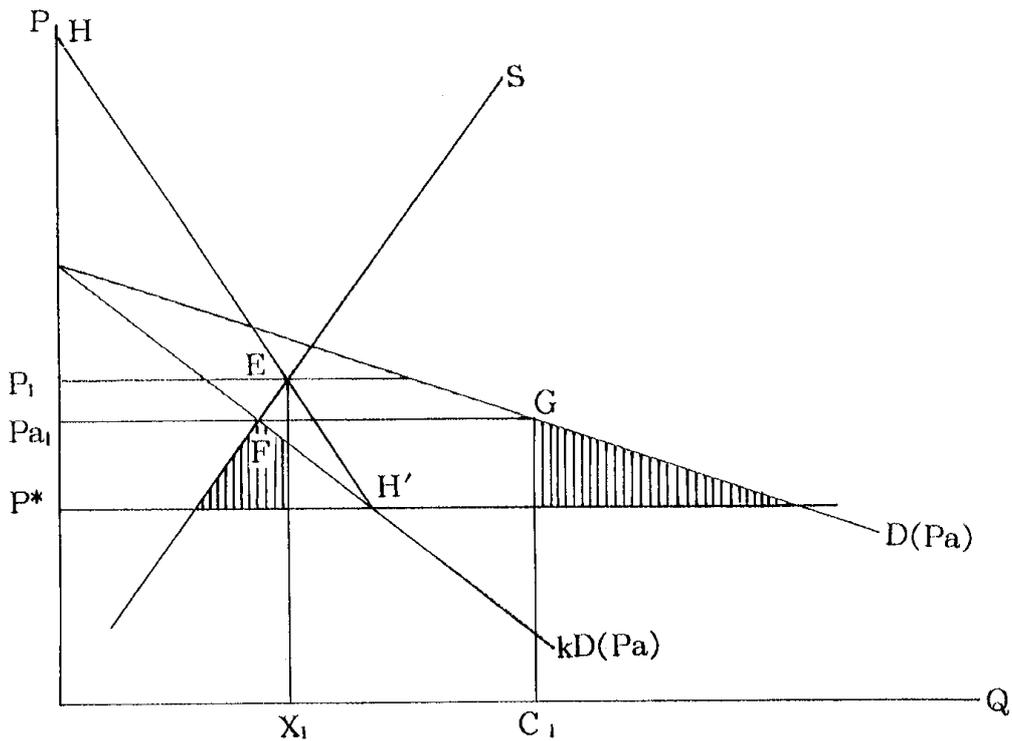
따라서 X와 X^* 는 완전대체품이며, 투입산출비율은 1.

만일 여기서 輸出物量 만큼에 대하여 k 비율만큼 域內의 部品이 사용되어야 한다는 原產地判定基準이 있다면 다음과 같은 式이 성립된다.

$$X = k(X + X^*) = kC$$

또한 $PA = kP + (1-k)P^*$, 여기서 PA 는 역내외 부품의 평균가격.

部品使用 義務比率의 效果



- P : 가격 Q : 생산량
 S : 공급곡선 $D(Pa)$: 평균수요곡선
 $kD(Pa)$: 역내산에 대한 수요곡선

따라서 $(X + X^*)$ 에 대한 수요는 Pa 의 함수이다. 그리고 國內 部品에 대한 수요함수는 $kD(Pa)$ 로 나타난다. 여기서 域內部品에 대한 균형을 도출하려면 국내에서 생산된 部品の 需要를 國內價格의 함수로 나타내어야 한다. 이는 위 그림의 HH' 곡선으로

한편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과연 原產地規程의 效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다. 우선 域內 부품사용 비율이 k 에서 k' 으로 바뀌는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 때 國內部品에 대한 수요는 $kD(P_a)$ 에서 $k'D(P_a)$ 로 우향이동할 것이며, 이에 상응하는 가격선 HH' 는 GG' 이 될 것이다. 따라서 國內價格은 종전보다 상승하여 P_1' 이 될 것이므로 平均價格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原產地規程을 통한 부품사용비율의 증가는 域內 部品에 대한 수요증대를 통한 생산의 증대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이를 貿易의 측면에서 보면 $X_1' - X_1$ 만큼의 貿易轉換效果가 발생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效果가 무한정 지속될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로 보인다. 즉, k 값이 지나치게 높아질 경우에는 P_a 의 값이 높아지는 정도가 特惠關稅로 얻게 되는 이익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경우에는 域內的 完製品 생산업자는 사용비율을 지키기 보다는 部品の 輸入을 통하여 관세상의 不利益을 價格競爭力으로 보완하려고 시도하게 될 것이다. 한편 이러한 制度는 빗금친 부분만큼의 비효율(Dead Weight Loss, DWL)을 가져옴을 알 수 있다. 이러한 非效率은 당연히 자원배분상의 왜곡을 반영하는 것인데 예컨대 域內에 存在하는 企業이 原產地規程을 滿足시키기 위하여 경쟁력이 열위에 있는 域內的 部品을 調達해야 하는 것으로 중요한 原因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Ⅱ. 南北韓 합작상품의 미국시장 진출과 原產地規程

1. 남북한 상호간의 特惠貿易

南北韓 양측은 '南北 基本合意書' 및 '南北交流協力에 관한 附屬合意書'에서 쌍방간의 교류를 국제무역이 아닌 민족내부간의 교류로 인정하는 한편, 相互間的 물자교류에 대하여 關稅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다. 關稅의 免除은 南北間의 교역을 촉진하는 가장 基本的手段 중의 하나이며 이러한 상호간의 關稅免除措置로 인하여 남북교역을 일종의 特惠貿易으로 간주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특혜관계는 단순히 상품교류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다 고차원적인 경제활동의 교류를 촉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경제협력 활동이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제약에서 벗어날 시 임가공, 합작투자 등의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단기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를 전제로 할 때, 原產地規程과 관련하여 두가지 측면이 지적될 수 있다. 첫째, 모든 特惠貿易 프로그램이 그러하듯이 關稅免除의 대상을 본래의 목적에 합당한 경우에 국한하도록 적절한 원칙을 세움으로써 第3者의 부당한 惠澤을 방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같은 目的 달성을 위하여 사용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原產地規程이다. 특히 原產地規程은 단순히 特惠措置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特惠對象 지역의 經濟的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南北交易 활성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本 규정의 적절한 설치와 운용이 요망된다.

둘째, 남북한 물자교류에 적용하는 原產地規程 뿐만 아니라 남북한 경제협력의 활성화와 함께 제 3국의 韓半島 投資 및 貿易活動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남북한 경제협력 관계가 단순한 관세감면에 머무르지 않고 여타 비관세적 측면으로 확대될 경우이다. 비특혜 原產地規程의 경우 향후 제정될 國際規範에 따라야 한다면 남북한

경협이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南北韓 관계의 특혜관계를 관세 뿐만아니라 포괄적인 규범을 통하여 규정함으로써 남북한 物資交流에 고유한 原產地規程이 무역 및 투자활동 전반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2. 美國의 對北韓 貿易規制

남북한간의 經濟協力이 보다 활발해질 경우 임가공, 합작투자 등의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제 3국 수출이 기도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의 가장 근본적인 동기는 무엇보다도 남북한 양지역의 相異한 比較優位를 적절히 결합하여 최종재화의 경쟁력을 극대화함으로써 輸出市場에서의 市場占有率을 확대하자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GATT 비회원국이나 적성국가에 대하여 별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아예 교역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제품의 최종 原產地判定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되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경우 현재로서는 대적성국가무역규제법(Trading with Enemy Act, TWEA), 수출관리법(Export Administration Act, EAA) 그리고 1974년 통상법 등에 근거하여 北韓과의 交易 및 交易對象物品을 제한하고 있다. TWEA는 전시 및 국가 비상시에 대통령이 지정하는 국가 및 국민과의 貿易活動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0년 이래 적국으로 지정된 北韓에 대하여 일체의 교역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이 명령은 유효한 상태이다. 특히 이 규제의 대상에는 외국소재의 미국기업이나 지분 50% 이상의 합작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EAA는 大統領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정책을 이유로 수출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이른바 수출통제 대상국가 Z그룹에 분류되어 통제품목 리스트상의 모든 품目に 대하여 통제를 받고 있다. 한편 적용 대상은 TWEA보다 훨씬 넓어서 미국산 부품을 포함하거나 미국산 기술을 이용한 外國製品까지 포함하고 있다.

한편 보다 중요한 문제는 北美關係의 改善으로 이상의 규제가 모두 해제된다 하더라도 미국은 1974년 통상법에 따라 北韓產製品에 대하여 MFN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이른바 'column 2' 관세율을 적용할 경우에는 實質的인 교류가 힘들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북한이 대외무역을 상당폭 개방하고 국제무역체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까지 이러한 차별적 관세의 적용될 것이라는 현실적인 제약을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감안해야 할 것이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개도국이라는 지위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一般特惠關稅制度(GSP)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대북한 진출은 상당한 유연성을 확보하고 추진됨으로써 향후 북미관계의 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3. 美國의 여타 貿易制度

多者間 纖維協定(MFA)과 같이 輸出國에 따라 수입물량이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原產地의 적절한 판정이 매우 필요하게 될 것이다. 특히, 韓國, 홍콩, 臺灣 등 일찍이 纖維 및 衣類 輸出에 주력한 國家들의 既得權을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는 纖維쿼타는 그 동안 先·後發開途國間의 경제발전 간격이 좁아지고 비교우위의 구도가 많이 전도된 현실을 생각하면 原產地의 확인이 매우 중요해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MFA하에서는 대규모의 쿼타량을 배정받고 있는 既得權 國家이면서도 이를 다 채우지 못하고 있는 반면, 中國 등 後發開途國들은 쿼타량에 묶여 충분한 輸出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섬유제조업체가 국내의 高勞動費用 문제를 해소하고자 북한에 賃加工事業 進出을 기도한다고 가정하자. 이러한 生産活動을 통해 生産된 製品의 原產地가 國產으로 판정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만일 北韓產으로 판정될 경우 원천적으로 수출이 불가능해질 수가 있는 것이다.

한편 原產地規程은 반덤핑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反덤핑制度의 기본적인 운영원리는 特定製品의 수입가격이 수출국의 市場價格에 비하여 훨씬 낮아서 國內의 産業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간주하고 제재조치를 실시하자는 것이다. 따라서 本 制度의 가장 중요한 핵심사항은 양 시장에서의 가격을 알아보고 과연 수입시 덤핑행위가 발생하였는가에 관한 내용이다. 그러나 特定製品의 生産地에 관한 정보가 뚜렷할 수 없는 오늘의 현실에 비추어, 製品의 原產地가 과연 輸出國인지 아닌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며 이 때 輸出國의 시장을 결정하기 위한 原產地 判定基準이 필요해지는 것이다.

또한 세이프가드制度에 의한 輸入規制措置로의 실시를 위해서도 항상 國內産業의 存在와 피해여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를 입은 製品이 과연 國內에서 생산된 것인지 그 여부가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도 原產地判定基準이 반드시 필요해지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直接投資活動이 활발해지고 企業이 생산활동을 多國間에 걸쳐서 진행하는 까닭에 특정국에서 기반을 두고 있는 企業이 만들어내는 製品이 반드시 그 나라 原產地를 부여 받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 그리고 만일 反덤핑이나 産業被害救濟를 신청한 企業의 製品이 原產地 認定을 받을 수 없다면 결국 피해를 입은 國內産業이 存在하지 않는다는 論理가 성립하므로 提訴 자체가 成立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反덤핑 提訴의 결과 反덤핑關稅를 물게 된 輸出企業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第 3國에 진출하고 自國의 部品을 이용하여 제품 생산 후 迂廻輸出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反덤핑關稅를 회피하기 위하여 취해진 이러한 投資活動에도 불구하고 迂廻輸出製品의 原產地 여부에 따라서는 여전히 反덤핑關稅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美國의 경우, 제 3국으로부터 수입된 제품 또는 부품이 反덤핑이나 相計關稅 (Countervailing Duty)의 적용대상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조사를 벌이는 수가 있는데 이를 '범위판정(Scope Determination)'이라고 한다. 이 경우 적용되는 '실질적 변형'의

기준은 통상적으로 稅關이 사용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 이 때 사용되는 주된 기준은 제품의 기능이 얼마나 바뀌었으며, 그 과정에서 부가된 부가가치의 수준은 얼마인가, 그리고 공정의 복잡성은 어느 정도인가 등이다. 이같은 기준의 적용은 그 객관성 여부를 차치하고 原產地의 判定을 위한 성격을 분명하게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덤핑관세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 美國內에서 제조 또는 조립되는 경우에도 사용된 부품, 부가가치 등을 고려하여 反덤핑關稅의 대상 여부를 판정하는데 이는 결국 제품의 原產地가 美國인지 아니면 원래 관세부과를 받던 제품의 原產地와 동일한지를 따지는 것이므로 原產地規程의 적용 例로 볼 수 있다. 즉 'Scope Determination'은 原產地規程과 개념상의 유사성을 많이 내포한다는 것이다.

原產地 表示制度(Origin Marking)는 국제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制度는 아니지만 '原產地'가 특별히 강조되는 制度라는 점에서 原產地規程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美國은 1930년 關稅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하여 原產地 表示를 의무화하고 있다. '最終 消費者(ultimate purchaser)'에게 原產地의 표시가 명료하게 傳達될 것을 의무화하는 이 制度는 주로 中間材의 경우 '最終消費者'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가 자주 쟁점으로 등장하는데 그 정의에 따라서 原產地의 表示方法이 달라져 輸出者의 부담 정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Ⅲ. 美國 原產地規程의 分析

1. 美國 原產地規程의 概要

美國의 非特惠 原產地規程은 우선 原產地表示制度, MFA制度 및 輸出自律規制 등 각 종 輸入數量 制限制度 그리고 關稅還給制度 등의 운영을 위한 것이며 그 기본적인 원칙은 原產地表示制度의 운영상 형성된 原產地判定 기준을 기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實質的 變形’이라는 原產地判定 기준상의 핵심적 개념은 여타 貿易措置의 시행상 原產地의 판정이 關鍵이 된 경우 本 개념에 대한 해석과 이의 축적을 통하여 성립되었다. 이같은 특징은 미국의 原產地規程의 명료성을 전반적으로 떨어뜨림은 물론 執行機關의 재량을 상당히 허용함에 따라 그 적용상 自意性和 差別性이 내포될 가능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새로 제정된 美國의 原產地規程은 基本的으로 세번변경 원칙에 입각하여 原產地 判定基準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실질적 變形’ 개념에 대한 해석 및 판례에 의한 原產地 判定보다 명료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릴 수 있다. 이같은 변화는 美國의 原產地表示制度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매우 획기적인 것으로서 무역활동상의 不確實性을 제거하는 데 매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NAFTA 原產地規程과 비교해 볼 때, NAFTA규정이 많은 품목에 대하여 예외적 기준을 부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새로 제정된 規程은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를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첫째, NAFTA 規程이 부가가치기준을 매우 포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반면에 本 規程에서는 附加價值基準의 적용이 배제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 무역적인 요소가 비교적 덜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같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공정이나 조립 등 충분하지 않은 공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부과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둘째, NAFTA 原

產地規程이 自由貿易地帶의 특성상 역외제품에 대한 차별을 기하기 위하여 세부 제품별로 공정의 특성을 감안한 判定基準을 마련해두고 있으나 本 規程에서는 비슷한 성격의 제품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한 判定基準을 제시하고 있어 客觀性을 비교적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美國의 原產地規程은 현행 制度에서 진일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합의된 바와 같이 '統一原產地規程(Harmonized Rules of Origin)'의 제정원칙에 입각한 것인지는 엄격한 분석을 필요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분석작업을 시도하는 한편 우리나라의 對北韓 經濟協力の 주요 대상으로 간주되는 산업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原產地 判定基準은 본문의 부록에 품목별로 정리해 놓았다.

2. 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產地 判定基準의 特徵

(1) 纖維原料 및 纖維絲類

纖維原料 및 纖維絲에 해당되는 제품의 原產地 判定基準의 기본적인 형태는 세번변경이다. 즉, 特定國이 纖維原料 또는 섬유사류에 해당하는 특정제품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각 제품군 이외의 품목분류(HS 4단위 또는 6단위 기준)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해당제품으로 변화하는 工程이 該當國에서 발생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로써 견(Silk)의 경우를 들어보기로 하자. HS 5001-5003 : "A change to heading 5001-5003 from any chapter" 즉, 여타 類(Chapter)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HS 5001-5003으로의 변화라 함은 HS 5001(누에고치), 5002(생사) 그리고 5003(견 웨이스트) 등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의 製品以外로부터 위의 제품으로 변화하는 工程이 발생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예컨대 特定國이 누에고치를 수출하는 데 있어서 이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원한다면 누에(즉, HS 5001-5003에 해당하지 않는 제품)를 직접 기르고 이로부터 누에고치를 생산해내는 工程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편 생사의 경우에는 이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누에고치로부터 생사를 뽑아내는 공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며 누에를 기르고 누에고치를 생산한 후 이로부터 실을 뽑는 공정이 발생해야 함을 의미한다. 여타 纖維原料의 경우에도 대체로 견의 경우와 동일한 형태의 原產地 判定基準을 갖고 있다.

纖維絲의 경우에도 纖維原料와 동일한 세번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다만 유사한 품목군을 하나로 묶음으로써 일정한 수준이상의 공정을 요구하고 있다. 예컨대 HS 5004-5006에 속한 견사 견방사에 해당하는 製品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사로부터 변화되는 工程을 거쳐야 하며 이들 품목내에서 제품간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 織物類

織物類에 있어서는 纖維原料 및 纖維絲의 경우보다 매우 복잡한 判定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우선 섬유직물로 분류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纖維原料 및 纖維絲와 마찬가지로 일단 세번변경이 설정되어 있으나 제품의 성격상 특징을 반영하여 주요 工程基準도 동시에 부가되어 있다. 즉, "A change to heading 5007 from any other heading; or A change from greige fabric of heading 5007 to finished fabric of heading 5007 by dyeing and printing, plus two or more of the following finishing operations—bleaching, shrinking, fulling, napping,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weighting, permanent embossing, or moireing." 따라서 본 기준에 의하면 실이 공정을 거쳐 직물이 되는 작업은 稅蕃變更이 일어나므로 原產地를 부여하는 데 충분하지만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에 명기된 작업이 발생할 경우에는 原產地를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아무런 加工을 거치지 않고 형태만 갖춘 織物(greige fabric)은 염색, 프린팅 작업과 함께 여타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 둘 이상 거친 경우에만 原產地를 인정하는 것이

다. 여기에 명기된 각종 공정이 갖는 기술적 의미는 전문적인 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지만 原產地 判定基準의 측면에서 볼 때에 原產地로 인정받을 수 있는 工程이 열거되어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우루과이라운드 原產地規程 協定上의 Positive System 원칙과 부합하는 것이다. 이처럼 原產地 부여가 가능한 공정이 제시되는 방식은 제품에 따라서는 매우 엄격한 요건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企業의 貿易 및 投資活動에 있어서 불확실성을 제거한다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이다.

織物類에 대한 위의 原產地 判定基準이 갖는 또하나의 특징은 직물의 소재와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이다. 즉, 絹織物(5007), 毛織物(5111-5113), 綿織物(5208-5212) 그리고 아마직물(5309-5311) 등 모든 織物類에 대하여 일관된 原產地 判定基準이 제시되어 있는데 이는 NAFTA 原產地規程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개선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NAFTA에서는 絹織物의 경우에는 견사로부터 絹織物을 제작하는 工程의 결과로 발생하는 세번의 변경을 原產地부여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는 반면 모직물의 경우에는 동일한 형태의 세번변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는 물론 NAFTA 會員國間의 産業 및 貿易構造에 따른 原產地規程의 경제적 성격을 반영하는 것인데 본 규정에서 동일한 유형의 제품에 대하여 동일한 原產地 判定基準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原產地規程이 가질 수 있는 차별적 성격이 상당히 제거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衣類製品

南北韓間의 經濟的 交流가 단순한 물자의 반출입을 제외하고는 임가공생산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향후 상당기간에도 이와 같은 生産方式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임가공생산방식의 주대상이 되고 있는 衣類製品에 대한 原產地 判定基準의 엄밀한 파악은 향후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생산된 제품의 대미시장

진출에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남자 또는 소년용의 슈트, 양상블, 자켓, 블레이저 그리고 긴바지 등의 품목을 포함하고 있는 HS 6103의 原產地規程을 살펴보기로 하자. 본 號의 제품에 대하여 우선 세 번변경이 제시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여타 類로부터 본 호로의 변화가 原產地 부여요건이므로 실제 공정상으로 볼 때에는 衣類의 기초적인 원료인 織物로부터 최종 제품으로의 변화를 의미하며 제품의 성격상 판단할 시 이같은 변화는 당연히 原產地 부여에 충분한 조건이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함께 個別 品目別로 별도의 原產地 判定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남자용 슈트(Suits)에 해당하는 HS 6103.11-6103.19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공정을 제시하는 이른바 주요 工程基準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HS 6117.90에 해당하는 소호의 제품(즉, 의류부분품)으로부터 위 소호들의 품목으로의 변화, 둘째, 주요 부품이 니트공정을 통하여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해석규칙 2(A)(GRI 2(a))의 적용 결과 6103.11-6103.19에 해당하는 소호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미조립 부품으로부터 조립된 의류로의 변화 등이다. GRI2(a)란 미조립 부품이 완성품의 본질적인 성격을 갖고 있을 때, 이 부품을 완성품과 동일한 Heading에 속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해석이다.

이상과 같은 기준은 우선 衣類部分품을 가지고 완성품을 제조하는 공정을 거침으로서 세번변경이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두번째 기준은 공정이 동일한 세번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서 단순한 組立工程만으로는 세번의 변경이 발생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기준은 組立工程의 대상인 衣類部品이 完成品の 본질적인 성격을 구성하고 있으나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못한 상태라면 이를 완성품으로 변화시키는 工程은 原產地를 부여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한편 이상과 같은 기준외에도 제품에 따라서는 判定基準에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나 대체로 거의 모든 종류의 衣類製品에 대하여 유사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 같은 특징은 특히 임가공방식의 생산에 있어 상당한 시사점을 갖는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이 북한측에 임가공주문을 하는데 있어서 北韓에 제공하는 부품의 성격을 조정함으로써 최종 製品의 原產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衣類製品에 관한 한 임가공에 의한 生産과 美國市場으로의 진출 시도는 美北關係의 변화가 진행되고 따라서 美國의 對北韓 貿易政策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단기간 동안에는 매우 유용한 방식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4) 신발류

신발류에 대한 原產地判定基準規程은 세번변경을 제시하고 있으나 갑피(formed uppers)로부터의 변경은 제외하고 있어 비교적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신발류의 本質的인 特性에 관한 傳統的인 해석에 기인하는 것인데 즉, HS 6406.10에 해당하는 신발류의 부분품 즉, 갑피와 안창이 신발의 본질적 특성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부품으로부터 신발의 完製品이 생산되는 공정 그 자체는 전혀 ‘實質的으로 變形’을 가져오는 作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품목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Group을 지정한 뒤 그룹내에서의 稅番變更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신발의 본질적 특성에 관한 공식적인 해석은 美 國際貿易裁判所에 의하여 이루어진 바 있는데, 이에 의하면 “신발창을 갑피에 부착하여 完製品 신발을 만드는 과정은, 갑피 자체를 만드는 과정보다 훨씬 작은 費用 및 時間을 소요하며, 또한 갑피의 제작에는 훨씬 높은 技術이 필요함”이 지적된 바 있다. 따라서 수입된 신발부품과 美國內에서 製造된 完製品은 稅番의 變更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다른 별개의 성격을 가졌다고 인정될 수 없는 것이다.

또 한가지 위 제품의 判定基準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점은 HS상의 품목분류방법이다. 즉, 신발제품에 대하여 美國은 製品의 輸入價格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것이

다. 이는 여타국가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것으로서, 이들 製品에 대한 關稅率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감안하여 주로 後進國으로부터 수입되는 低價品으로부터 國內産業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이와 같은 關稅構造는 前述한 신발제조공정에 관한 美 關稅廳의 입장과 貿易裁判所의 판결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있다. 왜냐하면 신발의 주요 부분품이 노동비용이 낮은 국가에서 생산, 수입된 후 美國內에서 조립하는 과정을 原產地賦與에 충분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서 이와 같은 高關稅를 회피하려는 기도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발류에서 이때까지 논의된 제품외에는 매우 간단한 稅番變更基準이 사용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제품에 대한 關稅率도 비교적 낮은 편이며, 美-캐나다 적용률과의 차이도 그리 크지 않다는 점에서 상당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北美地域에서는 뒷굽 등 일부 부분품을 제외하고는 組立工程이 原產地賦與에 불충분한 공정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5) 차량 및 차량부품

차량에 대한 原產地規程은 상당히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즉, HS 8701-8705 (트랙터, 승객수송용 자동차, 승용차, 화물자동차 그리고 특수용도 차량)에 해당하는 제품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위 품목군 이외의 호로부터의 세번변경 발생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다만 HS 8706에 해당하는 제품으로부터의 변화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8706에 해당하는 제품은 위에 열거된 각 자동차의 '엔진을 갖춘 샤시 (Chassis)'이다. 따라서 8706에서 해당 자동차를 만드는 공정은 原產地를 부여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다는 의미이다.

이상과 같은 判定基準을 해석하면 자동차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엔진의 原產地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즉 각종 엔진(HS 8407)과 샤시(HS 8708.99)가 '갑'의 국가에서 생산되고 '을'의 국가에서 이를 수입하여 결합한 후

여타 부분품의 조립을 통하여 자동차를 생산할 경우 '을'은 原產地로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의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국 엔진의 생산국이 여타 부품을 결합하여 자동차를 결합해내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결국 자동차와 같은 경우에는 특정지역의 原產地를 인정받는 것이 제품의 수출에 필요하다면 그 지역에 반드시 엔진을 생산 또는 조립하는 설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자동차 자체가 대규모의 투자를 필요로 한다는 점 이외에 原產地規程 측면까지 고려하면 특정 부품의 自體 組立 또는 生産의 設備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막대한 전후방 연관 효과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한 국가의 基幹産業으로 간주되고 있으나 오늘날에는 특히 日本을 중심으로 전세계의 比較優位를 취저 사용하기 위한 범세계화 전략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자동차산업도 장기적으로는 南北韓 經濟協力の 주요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치를 고려할 때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對北韓 直接投資는 매우 중요한 전략의 하나로 등장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原產地規程은 직접투자시 각종 工程配分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IV. 對北韓 投資類型과 原產地規程

1. 工程分業과 最終 製品의 原產地規程

1992년 4월 北韓은 外國人 投資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外國人과의 合作 및 合營法을 장려하고 있으며 여타 하위 法規程의 新設 또는 改正을 통하여 外國人 投資의 尤치를 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北韓의 경우, 통상적인 개념과는 약간 다른 合作, 合營 그리고 단독투자 등의 여러 형태의 유형이 존재하고 있으며 목적에 따라 복합된 형태의 투자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本 研究의 目的은 법적인 분류에 의한 투자의 형태에 따른 투자전략의 개발이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투자의 내부화 정도가 최종 제품의 성격에 미치는 효과를 파악하고 이들 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原產地規程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그 효과를 추정하는 데 있다.

최종 재화의 原產地 判定基準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이 임가공 생산방식에 의해서인지 아니면 직접투자 활동의 결과로 생긴 것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原產地 判定基準은 특정 국가에서 발생되어야 하는 공정을 규정한 것이며 따라서 제품별 判定基準은 제품의 특성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예컨대 組立工程이 제품의 특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상품은 組立工程의 수행만으로도 原產地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반면 자동차와 같이 특정 부품이 최종 제품의 성격을 구성하는 데 중요하다면 부품의 原產地가 최종 재화의 原產地 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됨은 이미 제 III장에 살펴본 바와 같다. 이처럼 투자의 내부화 정도가 일반적으로 原產地判定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제품간의 특성 차이와 이에 따른 판정기준상의 차이를 고려하면 合營, 合作사업 그리고 外國人 企業의 設立 등 投資形態 分類에 입각한 논의는 별다른 유용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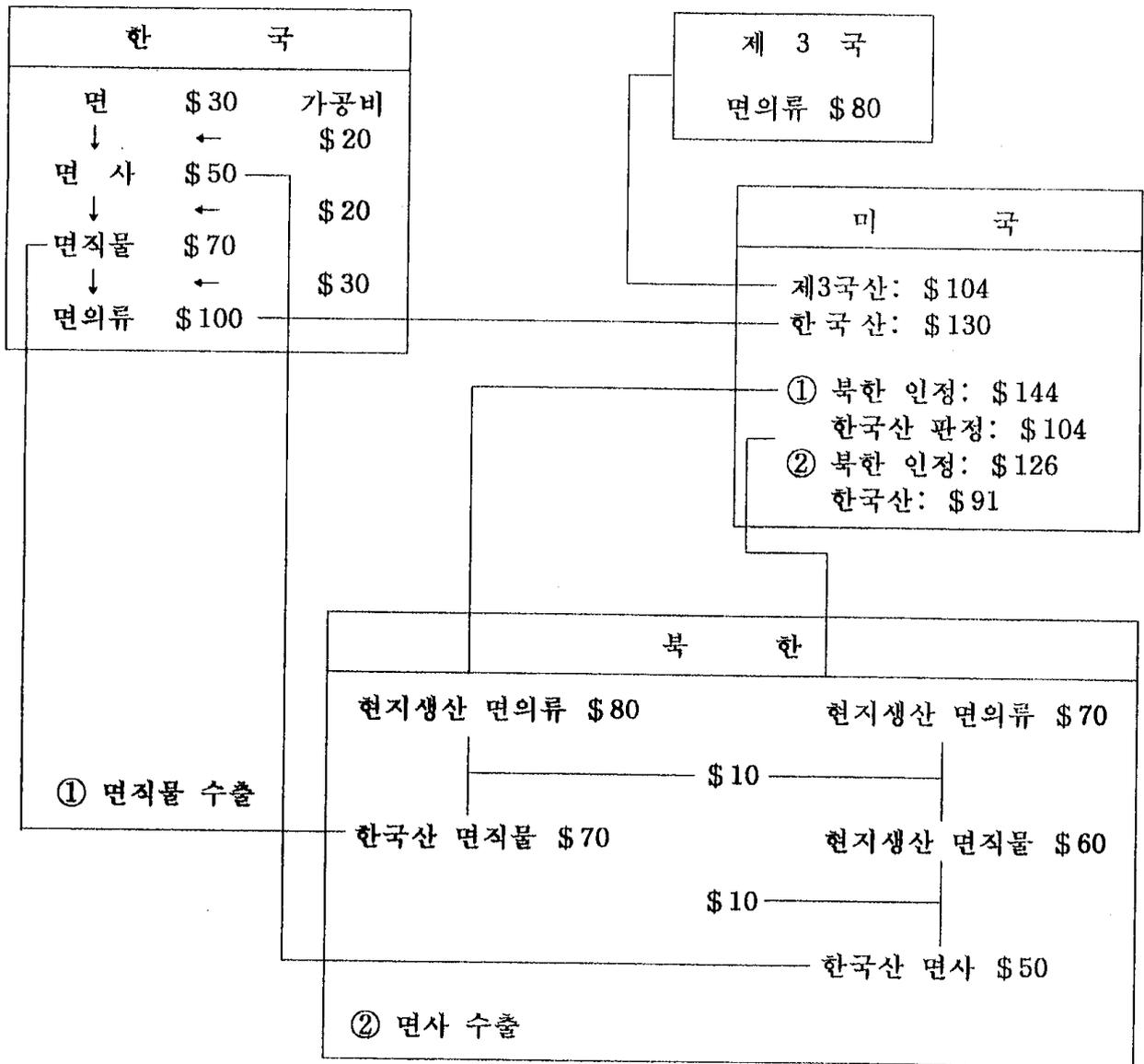
우선 임가공생산은 위탁가공방식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서 委託者가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수탁자는 노동력을 제공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형태이므로 위탁자는 생산비의

절감으로 통한 경쟁력의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가공임의 수취와 생산기술을 향상 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가공방식이 설비의 제공없이 부품만을 제공하고 북한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原產地規程의 측면에서 볼 때 가장 단순한 공정간의 결합형태라 할 수 있으며 따라서 原產地 判定基準의 적용도 매우 용이하다고 볼 수 있다. 直接投資의 경우는 최종재화의 原產地判定에 보다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데 이는 投資의 정도와 投資設備의 성격 및 제품의 공정상의 중요성 등에 따라 原產地判定에 상이한 영향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 임가공생산의 경우는 외형상 단순한 무역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設備投資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韓國에서 提供된 部品과 原料가 현지의 공정에서 상당한 변화를 초래하거나 현지의 부품 및 원료와의 결합을 포함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原產地 判定問題는 매우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제 I장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美國의 對北韓 貿易政策은 상품의 최종 原產地를 결정하게 되는 공정의 분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즉 적성국으로 분류한 현재의 상태가 지속될 경우, 貿易規制가 철폐된다 하더라도 MFN 관세율을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수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북한이 개방과 함께 국제무역에 적극 참가하고 美國이 北韓에 대하여 一般特惠關稅의 혜택을 부여할 경우 등을 상정해 볼 수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따라 北韓進出 企業은 적절한 공정의 분업을 시도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圖 IV-1>에서 보듯이 衣類製品이 생산되기 위해서는 3단계의 공정이 필요하다고 상정하자. 즉, 100\$ 만큼의 면의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30\$의 綿原料에다 綿絲, 綿織物, 그리고 綿衣類의 生産段階에 이르기까지 각 20\$, 20\$ 그리고 30\$ 만큼의 加工費가 투입된다고 가정하자. 美國市場에서 면의류에 대한 關稅率이 30%라면 한국제품의 미국내 가격은 130\$일 것이다 그런데 第3國(예컨대 중국)이 낮은 생산비를 바탕으로 유사한

제품을 80\$에 생산할 경우 이의 미국내 가격은 104\$이 된다. 이때 韓國이 價格競爭力上的 열세를 피하기 위하여 北韓과의 임가공투자를 통하여 生産 및 輸出을 시도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韓國企業이 면직물을 북한에 수송하여 의류를 생산할 경우 그 가격은 80\$이 될 것이다. 우리의 관심은 이러한 제품이 美國에 수출될 시 어떠한 關稅의 적용을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原產地 判定基準에 따라서는 제품의 통관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영향을 받게 된다.



〈圖 IV-1〉 原產地規程의 效果 - 纖維

첫째, 北韓에서의 工程이 衣類部품을 단순조립 또는 봉제의 공정만을 거치는 매우 간단한 것이라면 최소한의 세번변경 기준도 충족시키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공정 즉, 衣類部품에서 의류로 변화하는 공정이 原產地規程에 따라 한국산으로 판정된다면 미국내에서의 가격이 \$104로서 제 3국 제품과 동일한 價格競爭力을 가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형태의 分業形態는 北韓이 美國의 적성국으로 분류되어 있고 어떠한 형태이든 무역상의 규제가 존재하고 있는 한 채택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分業形態는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최소한의 附加價值(10\$)만이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닐 수도 있다.

다만 衣類製品의 原產地 判定基準을 살펴본 바와 같이 組立工程過程이 주요 부품을 니트하여 형태를 갖추는 공정을 포함하는 등의 경우에는 북한산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美國市場에서는 column 2 關稅率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종가격은 \$144 으로서 실질적인 시장진출이 봉쇄될 것이다. 따라서 임가공 생산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도 북한으로 반출하는 부품이 최종 제품에서 차지하는 성격과 북한내의 공정과정을 매우 세심하게 디자인하는 사전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北韓에서의 工程이 임가공이라 할지라도 한국에서의 발주가 단순한 衣類部品の 조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북한의 설비를 이용하여 면직물과 최종 의류가 생산되는 보다 고도화된 공정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美國의 原產地 判定基準上 北韓產 製品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방식은 北韓의 입장에서 볼 때, 附加價值의 발생 정도가 높을 뿐만아니라 산업을 Up-Stream 쪽으로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재처럼 미국이 對北韓 交易을 규제하고 있다면 대미 수출자체가 막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이와 같은 방식이 추진되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또한, 美國이 비록 對北韓 交易규제를 해제한다 할지라도 MFN 關稅率이 아닌 Column 2의 고관세율을 적용할 경우 실질적인 美國市場에의 진출 자체가 불가능해 질 것이므로 南北韓間의 協力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실제로 북한

산 물품에 대하여 MFN 관세율보다 훨씬 높은 80%의 關稅率이 부과되고 있다고 가정하면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은 126 \$로서 實質的인 價格競爭力의 改善效果는 거의 전무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北韓의 既存 設備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韓國 企業의 投資 내지 設備提供을 통하여 제품이 생산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적어도 제품의 原產地 판정과 관련한 측면에서는 생산설비의 지분과 관련한 소유자의 국적문제가 아니라 공정의 발생지 따라서 生産設備의 소재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공정분업은 적어도 對美 輸出의 목적에서 판단한다면 비교적 장기적인 관점에서 美北韓間의 충분한 관계개선을 전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美國이 北韓에 대하여 一般特惠關稅를 부여할 것으로 가정할 때 최종 제품이 경쟁력을 크게 향상시키게 될 것이므로 南北韓 兩側의 比較優位를 비교적 손쉽게 효율적으로 결합시키는 방안이라 할 것이다.

2. 原產地規程과 對北韓 投資戰略

이상의 논의를 감안할 때, 南北韓 經濟協力を 통하여 海外市場으로 진출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은 몇가지 측면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시간적 측면으로서 이는 北韓의 대외문호 개방정도에 따라 우리기업의 활동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는 현실 뿐만아니라 미국의 대북한 貿易規制政策의 변화가 상당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韓國企業의 對北韓 投資戰略은 장단기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韓 經濟協力の 성격이다. 현재까지는 많은 경우 남북한의 경제협력이 단순한 물자의 반출입이나 임가공을 중심으로한 委託加工事業에 머물러왔다. 기본적으로 경제활동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추진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남북한간의 경제협력은 궁극적으로 한반도내의 경제적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 동시에 이

루어질 필요가 있다.

美國市場으로의 진출을 위한 短期戰略의 관건은 美國의 原產地 判定基準에 의거 최종 재화가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전략구상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현재 상대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임가공생산방식을 중심으로 차츰 다양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南北韓 그리고 北美關係의 개선에 따라 北韓經濟의 문호개방이 상당폭 개방된다하더라도 美國의 對北韓 貿易規制政策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최소한의 공정만이 일어나게 되는 임가공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최종 재화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쉬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지역에서의 공정의 정도가 어느 정도 높아질 경우에도 특히 섬유제품에 관한 原產地規程에서 살펴보았듯이 한국기업이 搬出하는 원부자재의 성격을 조절함으로써 최종 제품의 原產地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

둘째, 北韓과의 임가공생산에 소요되는 원부자재의 한국산 여부가 적어도 해외시장 진출 관련해서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않는 점을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美國市場에의 진출에 대한 제도적 제약은 제품의 北韓產 여부에 따라 결정되며 제 3국산 또는 한국산으로의 판정여부는 수출시에 별다른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실은 韓國企業의 대북한 임가공생산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원부자재의 조달에 상당한 융통성을 제공한다고 할 것이다. 특히 단기에 있어 임가공 생산방식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섬유제품은 汎世界化된 생산방식(Globalization in the Production Processes)이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기업도 북한을 世界化 戰略의 한 축으로 간주하고 적극적인 제 3국 조달을 통하여 최종재화의 競争力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美國市場 진출에 관한 한 장단기의 구분은 결국 美國의 대북한 무역규제 변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美國이 對適性國家貿易法

(TWEA)이나 輸出管理法(EAA)에 의거하여 貿易規制를 실시하거나 북한에 대하여 MFN 關稅率이 아닌 Column 2의 높은 關稅率을 적용하는 시기동안을 단기로 간주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이러한 제약이 韓國企業의 對北韓 進出에 유형에 결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기업의 대북한 진출목적이 제 3국으로의 수출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현재로서는 최종 재화의 내수충당도 중요한 동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단기에서의 대북 투자전략은 北韓의 문호개방에 맞추어 투자활동의 고도화와 다양화를 추구하는 한편 美國市場에의 진출에 있어서는 原產地規程을 고려하여 공정을 디자인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다. 예컨대 제 III장에서 살펴본 신발제품의 경우와 같이 原產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갑피(formed uppers)’라는 핵심부품이 原產地判定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工程을 北韓地域으로 移轉할 것인지 여부는 다른 條件이 동일하다면 그 목적이 內需市場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美國市場으로의 진출을 위한 것이냐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북한 투자전략상 고려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美國의 對北韓 經濟制裁가 해제되어 현재의 中國과 같이 MFN대우를 받을 경우 原產地規程이 특별한 制約要因이라고 볼 수 없을 수도 있다. 그러나 南北韓의 相異한 比較優位構造를 적극적으로 결합한다는 차원에서 設備投資, 技術提供 등 보다 고도화된 투자활동으로 垂直的·水平的 工程分業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 最終財貨의 美國市場 進出은 단순히 관세차원이 아니라 각종 비관세조치의 대상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原產地規程이 중요성을 떨 가능성이 있다. 예컨대 韓國產 製品에 대하여 반덤핑조치가 취해졌다고 할 때, 北韓과의 合作으로 생산된 제품이 美國의 原產地規程에 의거하여 迂廻 輸出製品으로 판정될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북한 투자활동의 결과로 生産 및 輸出된 제품에 대하여 反덤핑關稅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통상적인 貿易障壁을 우회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도 原產地規程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기적으로 北韓이 開發途上國으로 분류되어 先進國으로부터 GSP 등 특혜관세의 대상이 될 경우를 상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북한 투자활동 결과 생산되는 제품이 北韓을 原產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공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나 주의할 점은 北韓에서 생산된 제품의 특혜대상 여부는 별도의 原產地規程의 적용을 받는다는 것이다. 一般特惠關稅 역시 별도의 原產地規程이 부속되어 있으므로 이의 숙지가 필요한데 본 규정상의 原產地判定基準의 핵심은 一般規程과는 달리 附加價值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특정 제품이 GSP의 特惠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受惠國에서 최종재화의 35% 이상의 附加價值가 발생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제시되어 있다. 따라서 임가공생산 또는 직접투자활동의 전개시 이러한 요건을 만족시키도록 공정이 디자인되어야 할 것인데 美國은 소위 '2중 실질적 변형'이라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한 組立工程만으로 수혜국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要件이 충족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하여 수혜국에서 발생한 附加價值를 산정하는 데 포함되는 부품도 수혜국이 原產地인 재료를 사용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두고 볼 때, 原產地規程은 한국이 그동안 경쟁력을 상실해 온 각종 산업의 해외이전이 다시 한반도내로 전환되는 효과를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核心部品과 관련한 原產地 判定基準이 항상 유사한 효과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동차의 경우 엔진의 생산지가 原產地判定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여 신발산업처럼 자동차엔진의 生産設備가 北韓地域으로 쉽게 移轉될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原產地規程의 이러한 효과에 대한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韓半島의 産業構造에 비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남북한 지역의 경제적 분업구조가 궁극적으로는 市場原理에 의해서 형성되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상기하면 原產地規程의 이러한 효과도 결국 2차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다만 原產地規程은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制約要因임에는 분명하다는 평가는 항상 유효하게 남아 있다고 할 것이다.

附 錄

— 美國의 主要 製品別 原產地 判定基準 —

- 註: 1. 判定基準에 등장하는 GRI 2(a)는 美國의 關稅率表上의 分類表와 相關한 주석으로서 특정세번에 속한 產品의 부품이 本 製品의 本질적인 性격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는 동일한 세번으로 분류한다는 해석임.
2. 대표관세율은 해당 품목군중에서 가장 높은 MFN 關稅率 品目を 골라 MFN 關稅率과 Column 2에 기재된 關稅率을 비교한 것임.
3. 類(Chapter)는 HS 2단위 분류, 號(Heading)는 HS 4단위 분류, 小號(Sub-heading)는 HS 6단위 분류를 각각 의미함.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5001-5003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001-50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5	50
5004-5006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004-50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50
5007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0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007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 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t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 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5007에 해당하는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5	90
5101-51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101-51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1	30
5106-5110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106-51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9	55.5
5111-5113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111-511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111-5113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t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 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7	68.5
5201-5203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201-52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15.4
5204-5207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204-52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2	34.1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5208-5212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208-521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5208-5212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t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33	68.5
5301-53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301-53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20
5306-5308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306-53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6	35
5309-5311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309-53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309-5311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t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25	90
5401-5403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401-54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3	55
5404-5405	3920-392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404-54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8	50
5406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4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3	55
5407-5408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407-54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111-5113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	17	81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공정,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무계공정, 영구 엠보싱 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5501-5507	5401-5405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501-55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45
5508-5511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508-55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5	81
5512-5516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512-551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512-5516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무계공정, 영구 엠보싱 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17	81
56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46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2.5	74
5602-5605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602-56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6	83.5
5606	5004-5006, 5106-5110, 5204-5207, 5306-5308, 5401-5406, 5508-55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6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1.5	80
5607	(1) 5004-5006, 5106-5110, 5204-5207, 5306-5308, 5401-5406, 5508-55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607에 해당하는 號의 끈, 코오디지, 로우프, 케이블(이들은 엮은 것과 짠 것,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8	76.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커버한 것 및 시이드한 것 모두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로의 변화 (2)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607에 해당하는 號 제품의 끈, 코오디지, 로우프, 케이블(엮은 것과 짠것, 혹은 고무 또는 플라스틱으로 커버한 것 및 시이드한 것)로의 변화		
5608	58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하고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6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82
5609	5004-5007, 5106-5113, 5204-5212, 5306-5311, 5401-5408, 5508-5516, 56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6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9	78.5
5701-57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701-57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60
5801-5802	이 그룹외의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01-58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5801-5802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23	50
5803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81
580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5804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풀공정, decatiz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 제품으로의 변화	16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5805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	74
5806.10- 5806.39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06.10-5806.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5806.10-5806.39에 해당하는 小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縮絨공정, 보플공정, decating, permanent stiffening, 무게공정, 영구 엠보싱공정, 므와르공정작업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	9.5	68.5
5806.4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6.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6	83.5
5807	(1) 레이블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뱃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630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7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의 변화	9	71.5
5808.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8.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6	90
5808.90	(1) 장식용 트리밍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장식술, 품퐁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5004-5006, 5106-5110, 5204-5207, 5306-5308, 5401-5406, 5508-55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어떤 號의 제품으로부터 580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8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580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81
5810	(1) 자수포의 무게가 ground fabric의 무게와 같거나 넘게 되는 지역에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ground fabric 변화 (2) 자수포의 무게가 ground fabric의 무게보다 덜 나가게 되는 지역에서는, ground fabric이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 5603, 5608, 5903, 5907, 6001, 6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8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6	90
5811	(1)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1-5603, 5806, 5809-5810, 6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 및 630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58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outer fabric이 quilting되는 같은 국가에서 염색, 프린트되는 경우)	15	57
5901-590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1-59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	74.5
5903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3, 5806.31-5806.39, 5808, 6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1) 직물(woven fabric)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3에 해당하는 號의	5.3	4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제품으로의 변화(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이 섬유 전체 무게 中 적어도 15%를 차지하는 경우) : 혹은 (2) 수편물(knit fabric)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이 섬유 전체 무게 中 적어도 20%를 차지하는 경우)		
5904-5906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4-59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40
5907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803, 5806, 5808, 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1) 직물(woven fabric)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이 섬유 전체 무게 中 적어도 15%를 차지하는 경우) : 혹은 (2) 수편물(knit fabric)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이 섬유 전체 무게 中 적어도 20%를 차지하는 경우)	16	83.5
5908-59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08-59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	74
5911	5602-56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59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68.5
60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0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001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응축공정(compacting), 보풀공정, shearing, calendaring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	19.5	79.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002	<p>으로의 변화: 혹은 6001에 속한 號의 섬유제품으로부터 고무 또는 플라스틱 및 그외 물품으로 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 된 60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impregnation, 코팅, 도포, lamination이 전체 섬유무게 中 적어도 20%를 차지하는 경우)</p> <p>이 그룹외의 어떤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6002에 속한 號의 greige fabric으로부터 표백공정, 수축공정, 응축공정(compacting), 보풀공정, shearing, calendering 및 염색과 프린팅의 공정을 거친 동일한 號의 완성된 섬유제품으로의 변화</p>	19	65.5
6101	<p>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7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1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통하여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 적용 결과,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된 unassembled 의류의 구성요소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16.9	50
6102	<p>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77.90 혹은 6217.90</p>	16.9	5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103	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2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통하여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 적용 결과,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된 unassembled 의류의 구성요소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6103.11- 6103.1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3.11-6103.1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03.11-6103.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8.7	90
6103.21- 6103.29	양상불의류는 개별취급해야 하며 각각의 의류에 적용되는 marking rule은 의류가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하게 된다.		
6103.31- 6103.3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3.31-6103.39의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03.31-6103.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	72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103.41- 6103.4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3.41-6103.49의 小號의 assembled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혹은 짧은 바지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6103.41-6103.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혹은 짧은 바지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	72
6104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04.11- 6104.19	61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4.11-6104.1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6104.11-6104.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8.8	90
6104.21- 6104.29	양상불의류는 개별취급해야 하며 각각의 의류에 적용되는 marking rule은 의류가 개별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적용하게 된다.		
6104.31- 6104.3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4.31-6104.39의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shape하기위해 knit되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04.31-6104.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	72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104.41- 6104.49	GRI 2(a)의 적용 결과, 6104.41-6104.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5 혹은 그 이상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된 assembled tailored 의류로의 변화 (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54.5
6104.51- 6104.5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4.51-6104.5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72
6104.61- 6104.6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4.61-6104.69의 小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tailored 바지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6104.61-6104.6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tailored 바지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72
61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5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61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21	4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106	<p>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06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p>GRI 2(a)의 적용 결과, 61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21	45
6107-610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07-61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4	90
6110	<p>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10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긴소매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shape 하기 위해 knit되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긴소매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7.5	52
6111	95에 속한 제품을 제외한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11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겹옷	34.6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112	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겉옷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2.11- 6112.20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12.11-6112.20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fully lin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12.11-6112.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	72
6113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113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1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7.6	65
6114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5혹은 그 이상의 주요부품으로 구성되고 6114에	34.3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11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6115-6117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115-611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0	90
6201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1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 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1)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2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의류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76
6202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1)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2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 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1) fully lined,	17	76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203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하지 않은 아노락,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 및 (2) 케이프, 클룩 및 이와 유사한 의류를 제외한 62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의류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6203.11- 6203.1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3.11-6203.1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3.11-6203.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16.5	90
6203.21- 6203.29	양상블의류는 개별취급해야 하며 각각의 의류에 적용되는 marking rule은 의류가 개별적으로 entered 되는 경우 적용하게 된다:		
6203.31- 6203.39	6117.90 혹은 6217.90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3.31-6203.3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3.31-6203.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22	59.5
620341- 6203.4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3.41-6203.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shape 하기위해 knit 되지 않았을 경우):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	17	76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p>로부터 6203.41-6203.4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lined tailored 바지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p>GRI 2(a)의 적용 결과, 6203.41-6203.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tailored 바지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6204	<p>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p>		
6204.11- 6204.19	<p>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4.11-6204.1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4.11-6204.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p>	17	58.5
6204.21- 6204.29	<p>양상불의류는 개별취급해야 하며 각각의 의류에 적용되는 marking rule은 의류가 개별적으로 entered되는 경우 적용하게 된다:</p>	8	90
6204.31- 6204.39	<p>6117.39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4.31-6204.3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4.31-6204.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p>	7.5	6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204.41- 6204.4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5 혹은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6204.41-6204.4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tailored 의류로의 변화: 혹은 GRI 2(a)의 적용결과, 6204.41-6204.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5 혹은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assembled tailor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58.5
6204.51- 6204.5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4.51-6204.5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17	90
6204.61- 6204.6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4.61-6204.6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lined tailored 바지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GRI 2(a)의 적용 결과, 6204.61-6204.6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bib & brace overalls 혹은 fully tailored 바지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76
62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shape 하기위해 knit 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5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206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주요부품이 shape 하기위해 knit되지 않았을 경우)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6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tailored 긴소매블라우스,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tailored 긴소매셔츠, 혹은 assembled tailored 긴소매블라우스, 혹은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셔츠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90
6207-6208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7-62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17	90
6209	95에 속한 類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09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겹옷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겹옷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0.4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201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혹은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10에 해당하는 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긴소매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 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긴소매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7.6	65
6211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경우): 혹은	29.6	90
6211.20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6211.20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shape 하기위해 knit되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11.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assembl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29.9	90
6211.31- 6211.49	6117.90 혹은 621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의 5 혹은 그 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되고 6211.30-6211.49에 해당하는 小號의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혹은 GRI 2(a)의 적용 결과, 6211.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 분류되는 unassembled 부품으로부터 5 혹은	17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212	그이상의 부품으로 구성된 assembled fully lined, fully padded, fully insulated 의류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1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형태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32	90
6213-6214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6, 5808-5811, 5901, 5903, 5906-59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의 제품으로부터 6213-621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주요부품이 니트공정을 거쳐 갖추지 않았을 경우)	13.3	90
6215-6217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215-621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5.5	90
6301.10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1.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3	77.5
6301.20 - 6301.90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2, 5809-5811, 5903, 5907, 6001-6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1.20-630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4.3	90
6302	(1) 아래 (2)에 속한 quilted(상품) 이외에 대하여,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4, 5806, 5809-5810, 5901, 5903, 5906-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3.8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2) quilted 상품에 대해서는, (a) 혹은 (b) 중 하나 : (a) 630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cutting of the top와 bottom fabrics 및 quilted 상품의 모든 조립부품(assembly)이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b) (a)가 만족되지 않을 경우, 생산국은 섬유를 생산한 국가가 되거나 상품에 기본적인 성격을 더해주는 국가가 될 것이다.		
6303	(1) quilted 상품에 대해서는, 6307.90에 속한 小號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cutting of the top와 bottom fabrics 및 quilted 상품의 모든 조립부품(assembly)이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이 rule이 만족되지 않는 경우, 생산국은 섬유를 생산한 국가가 되거나 상품에 기본적인 성격을 더해주는 국가가 될 것이다 : 혹은 (2)위의 (1)에 해당되는 상품을 제외한 커튼, 드레이프, 벨란스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적어도 모든 side의 커팅, 가장자리 감치기 및 바느질이나 조립부품의 조작이 모두 이루어졌을 경우) (3) 위의 (1), 혹은 (2)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 및 여타 상품에 대해서는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4, 5806, 5809-5810, 5901, 5903, 5906-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2.8	90
6304	(1) 아래 (2), (3)에 해당되는 quilted 상품, 베개 커버에 대해서는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4, 5806, 5809-5810, 5901	17	9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5903-5904, 5906-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quilted상품에 대해서는 630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cutting of the top와 bottom fabrics 및 quilted 상품의 모든 조립부품(assembly)이 어느 한 국가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경우): (3) 베개커머에 대해서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305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2, 5809-5811, 5903, 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9.5	103
6306.11- 6306.19	(1) 타포린, 천막에 대해서는 5007, 5111-5113, 5208-5212, 5209-5311, 5407-5408, 5512-5516, 5603, 5801-5802, 5809-5811, 5903, 5906-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6.11-6306.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차양에 대해서는,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6.11-6306.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6	90
6306.21- 6306.4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6.21-6306.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6	90
6306.91- 6306.99	6307.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6.91-6306.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커팅 및 가장자리 감치기 과정 이상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경우)	9	78.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307.10	5007, 5111-5113, 5208-5212, 5309-5311, 5407-5408, 5512-5516, 5602-5603, 5801-5804, 5806, 5809-5811, 5903, 5907, 6001-6002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7.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26.2
6307.20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7.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9	78.5
6307.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0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적어도 커팅, 바느질, 혹은 조립부품의 조장이 이루어졌을 경우)	11.6	74
6308	set상품의 본질적 성격을 결정하는 것으로 고려되는 set내 제품의 원산지	13	55
6309	상품을 선적(shipment)할 때 마지막으로 수집, 포장된 국가	1.8	93
6310	녕마에 대해서는, 상품을 선적할 때 마지막으로 수집, 포장된 국가: 그 이외에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3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8	93
6401-6405	갑피(formed uppers)를 제외한 이 그룹외의 여타 품목으로부터 6401-64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8	84
6406.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406.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8	84
6406.20- 6406.9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406.20-6406.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72
6501-6502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501-65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	2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503-6506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503-65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단, 6501-6502에 속한 號의 제품은 제외: 혹은 blocking 과정을 거친 6501에 속한 號의 제품으로부터 6503-65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503-65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적어도 염색, 블록킹, 트리밍(혹은 seatband 첨가)의 세가지 과정의 결과가 이루어졌을 경우)	10	90
6507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5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3	35
66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6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2	40
660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6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8	40
6603.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603.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45
6603.2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603.2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그러한 변화가 GRI 2(a)에 다르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6603.90으로부터의 변화	12	60
660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603.9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45
67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7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feathers or down으로부터 6701에 해당하는 號의 feathers or down제품으로의 변화	4.7	60
6702-670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702-67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이 그룹에 속한 여타 號의 제품 포함	8.4	6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801-6811	이 그룹에 속한 號의 제품을 포함,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01-681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30
6809.1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09.1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4	30
6809.1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09.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6809.9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0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60
6810.1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0.1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6810.1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0.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40
6810.91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0.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6810.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0.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6811.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1.10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2.2
6811.2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1.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2.2
6811.3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1.30에 해당하는 th2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0.3	1.7
6811.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1.9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의 변화. 그러한 변화가 실질적 변형을 초래할 경우	free	2.2
6812.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4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6812.2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40
6812.3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812.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은 제외	free	40
6812.4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40
6812.5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5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2.5	35
6812.60- 6812.70	이 그룹외의 어떠한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60-6812.7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25
6812.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경우 6812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2.9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의 변화	free	25
6813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free	23
6814.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4.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 혹은 실질적 변화를 초래할 경우 6814.10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4.90에 해당하는 제품으로의 변화	5.3	40
6815	이 그룹을 포함,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815.10-6815.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45
6901-6914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6901-691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75
70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700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6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7003-7006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3-70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8	53
7007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2	50
7008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50
7009.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7009.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8	50
80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0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0.02- 80.04	이 그룹으로 분류되는 재료를 포함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0.02-80.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의 변화를 포함하여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봉(rod)이나 프로파일(profile)을 제외한 봉(bar)</u> ; <u>봉(rod)이나 프로파일을 제외한 봉(bar)</u> ; <u>봉(rod or bar)을 제외한 프로파일</u> ; <u>봉(rod)을 제외한 선(wire)</u> , <u>쉬트(sheet)나 스트립(strip)을 제외한 판(plate)</u> ; <u>판이나 스트립을 제외한 쉬트</u> ; <u>쉬트나 판을 제외한 스트립</u>	4.2	45
8005.10- 8005.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005.10-8005.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	35
80.60- 80.7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0.60-80.7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에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파이프를 제외한 튜브</u> ; <u>튜브를 제외한 파이프</u> ; <u>튜브나 파이프를 제외한 튜브부품이나 파이프부품</u> ; <u>케이블/stranded 선/판(plated) 밴드(band)</u>	3.1	4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101.10- 8101.9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1.10-8101.9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matte</u> ; <u>괴(unwrought)</u> ; <u>봉(rod)</u> 이나 <u>프로파일(profile)</u> 을 제외한 <u>봉(bar)</u> ; <u>봉(rod)</u> 이나 <u>프로파일을 제외한 봉(bar)</u> ; <u>봉(rod or bar)</u> 을 제외한 <u>프로파일</u> ; <u>쉬트(sheet)</u> 나 <u>스트립(strip)</u> 을 제외한 <u>판(plate)</u> ; <u>판</u> 이나 <u>스트립</u> 을 제외한 <u>쉬트</u> ; <u>쉬트와 스트립</u> 을 제외한 <u>박(foil)</u>	10.5	58
8101.93	8192.92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1.93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60
8101.99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1.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파이프를 제외한 튜브</u> ; <u>튜브를 제외한 파이프</u> ; <u>튜브나 파이프를 제외한 튜브부품이나 파이프부품</u> ; <u>케이블/stranded 선/판(plated) 밴드(band)</u>	5.5	45
8102.10- 8102.9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2.10-8102.9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에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matte</u> ; <u>괴(unwrought)</u> ; <u>봉(rod)</u> 이나 <u>프로파일(profile)</u> 을 제외한 <u>봉(bar)</u> ; <u>봉(bar)</u> 이나 <u>프로파일을 제외한 봉(rod)</u> ; <u>봉(rod od bar)</u> 을 제외한 <u>프로파일</u> ; <u>쉬트(sheet)</u> 나 <u>스트립(strip)</u> 을 제외한 <u>판(plate)</u> ; <u>판</u> 이나 <u>스트립</u> 을 제외한 <u>쉬트</u> ; <u>쉬트나 판</u> 을 제외한 <u>스트립</u> ; <u>쉬트와 스트립</u> 을 제외한 <u>박(foil)</u>	6.6	60
8102.93	8102.92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2.93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6	6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102.99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2.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5	45
8103.10- 8113.0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103.10-8113.0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이 號에서 분류된 원료(material)로부터 이 號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시된 물품으로의 변화: <u>matte</u> ; <u>괴(unwrought)</u> ; <u>flake</u> 을 제외한 <u>분(powder)</u> ; <u>분을 제외한 flakes</u> ; <u>봉(rods)</u> 이나 <u>프로파일(profiles)</u> 을 제외한 <u>봉(bar)</u> ; <u>봉(bars)</u> 이나 <u>프로파일을 제외한 봉(rods)</u> ; <u>봉(rod or bar)</u> 을 제외한 <u>프로파일</u> ; <u>봉(rod)</u> 을 제외한 <u>선</u> ; <u>쉬트(sheet)</u> 나 <u>스트립(strip)</u> 을 제외한 <u>판(plates)</u> ; <u>판이나 스트립을 제외한 박(foil)</u> ; <u>파이프를 제외한 튜브</u> ; <u>튜브를 제외한 파이프</u> ; <u>튜브나 파이프를 제외한 튜브부품이나 파이프부품</u> ; <u>케이블/stranded 선/판(plated) 밴드(band)</u>	14	20
8201.10- 8202.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201.10-820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2	60
8202.91	8202.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202.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20
8202.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202.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203.10- 8207.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203.10-820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2	6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2.08- 82.15	이 그룹내의 다른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2.08-82.1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7	40
8301.10- 8301.5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1.10-8301.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301.6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GRI 2(a)에 따르게 되는 경우는 제외	6.2	45
8301.60- 8601.70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1.60-8301.7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302.10- 8302.6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2.10-8302.6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60
83.03- 83.04	이 그룹내의 다른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3-83.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305.10- 8305.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5.10-830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3.06- 83.07	이 그룹내의 다른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6-83.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65
8308.10- 8308.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8.10-830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3.09- 83.10	이 그룹내의 다른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09-83.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5
8311.10- 8311.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311.10-831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8401.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1.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45
8401.20	8403.20에서 규정된 부품이나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401.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01.4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1.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45
8402.11- 8402.12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2.11-8402.1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45
8402.19- 8402.20	이 그룹내의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2.19-8402.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45
8402.90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구부러서 형을 만드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5	45
8403.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3.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0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5
8404.10- 8404.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4.10-8404.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	45
8404.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	45
8405.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5.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8	45
8405.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8	45
8406.11- 8406.1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6.11-8406.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20
8406.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5	27.5
84.07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35
84.08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09.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9.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8409.91- 8409.99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변화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09.91-8409.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10.11- 8410.13	이 그룹내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0.11-8410.13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5	27.5
8411.11- 8411.82	이 그룹내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1.11-8411.8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5
8411.91- 8411.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1.91-8411.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12.10- 8412.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412.10-8412.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5
8412.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4	30
8413.11- 8413.8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2.10-8412.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413.91	여타 號에 속하는 제품으로부터 8413.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413.92	여타 號에 속하는 제품으로부터 8413.9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414.10- 8414.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4.10-8414.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35
8414.90	여타 號에 속하는 제품으로부터 841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35
8415.10- 8415.83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이 그룹내 변화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5.90-8415.83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2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15.90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변화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2	35
8416.10- 8416.3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6.10-8416.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4	27.5
8416.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4	27.5
8417.10- 8417.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7.10-8417.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17.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18.10- 8418.91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8.10-8418.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9	35
8418.99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구부러서 형을 만드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8.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9	35
8419.11- 8419.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9.11-8419.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19.90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구부려서 형을 만드는 공정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7303, 7304, 7305, 혹은 7306에 속한 號의 제품을 제외하고 8404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가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1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5
8420.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0.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20.9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0.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20.99	8501에 속한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0.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21.11- 8421.3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1.11-8421.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21.9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1.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25
8421.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1.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22.11- 8422.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2.11-842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5	30
8422.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5	3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23.10- 8423.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3.10-8423.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45
842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5	45
8424.10- 8424.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4.10-8424.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24.90	8414.40-8414.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25.11- 8430.6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25.11-8430.6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4.31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가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32.10- 8432.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2.10-8432.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2.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3.11- 8433.6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3.11-8433.6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33.90	8407에 혹은 84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3.9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	30
8434.10- 8434.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4.10-8434.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4.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4.9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5.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5.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0
8435.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5.9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0
8436.10- 8436.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6.10-8436.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6.9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6.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6.99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6.9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7.10- 8437.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7.10-8437.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37.90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35
8438.10- 8438.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8.10-8438.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5	35
8438.90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39.10- 8439.3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9.10-8439.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35
8439.91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9.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20
8439.99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39.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440.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0.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25
8440.90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0.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25
8441.10- 8441.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1.10-8441.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41.90	8407, 8408 혹은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 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442.10- 8442.3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2.10-8442.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42.4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42.5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2.5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43.11- 8443.6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3.11-8443.6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4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5	40
8445.11- 8447.9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445.11-844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48.11- 8448.19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변화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8.11-8448.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40
8448.19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변화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8.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7	40
8448.20- 8448.59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8.20-8448.5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2/ 1000+ 6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4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4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50.11- 8450.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0.11-8450.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50.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0.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51.10- 8451.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1.10-8451.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51.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452.10- 8452.29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2.10-8452.2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0
8452.30- 8452.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2.30-845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42
8452.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0
8453.10- 8453.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3.10-8453.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53.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54.10- 8454.3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4.10-8454.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54.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55.10- 8455.2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5.10-8455.2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8455.3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5.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8455.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0
8456.10- 8456.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6.10-845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30
8457.10	84.58-84.65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7.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0
8457.20- 8465.99	이 그룹내의 다른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57.20-8465.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3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66.10- 8466.94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6.10-8466.94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8	45
8467.11- 8467.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7.11-8467.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5	30
8467.91- 8467.99	84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7.91-8467.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27.5
8468.10- 8467.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8.10-8468.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68.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69.10- 8469.39	이 그룹외의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69.10-8469.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2	35
8470.10- 8471.91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0.10-8471.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40
8471.92- 8472.90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1.92-847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73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	4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74.10- 8474.80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4.10-8474.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9	35
8475.10- 8475.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5.10-8475.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75.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76.11- 8476.19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6.11-8476.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76.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77.14- 8477.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7.10-8477.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77.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478.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8.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5
8478.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79.10- 8479.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9.10-8479.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0
8479.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7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8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81.10- 8481.80	8481.9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1.10-8481.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	45
8481.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	45
8482.10- 8482.80	(1)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2.10-8482.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2)이 그룹내의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2.10-8482.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inner 및 outer race가 국내 원료이거나 balls/rollers가 국내원료일 경우)	6.5	67
8482.91- 8482.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2.91-8482.99으로의 변화	6.5	67
8483.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3.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	3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483.20	8482.10-8482.80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아 제품으로부터 8483.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83.30- 8483.6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3.30-8483.6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8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484.10- 8484.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4.10-848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485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485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0
85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5
850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503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90
8504.10- 8504.5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4.10-8504.5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8504.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05.11- 8505.3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5.11-8505.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05.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06.11- 8506.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6.11-8506.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06.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07.10- 8507.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7.10-8507.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1	40
8507.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40
8508.10- 8508.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8.10-8508.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2	35
8508.90	85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이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2	35
8509.10- 8509.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9.10-8509.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40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09.90	8501에 해당하는 號가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0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4	35
8510.10- 8510.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0.10-8510.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35
8510.90	8501에 해당하는 號가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0.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35
8511.10- 8511.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1.10-8511.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35
8511.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35
8512.10- 8512.30	이 그룹외의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2.10-8512.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6	45
8512.40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2.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12.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6	45
8513.1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3.1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1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514.10- 8514.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4.10-8514.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514.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4.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515.11- 8515.8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5.11-8515.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515.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35
8516.10- 8516.7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8516.10-8516.7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40
8516.8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6.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16.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517.10- 8517.8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7.10-8517.8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5	35
8517.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5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18.10- 8518.5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8.10-8518.5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5	35
8518.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8.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5	35
8519.10- 8521.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19.10-852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2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23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80
852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8525.10- 8525.20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5.10-8525.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8525.3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5.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5
8526.10- 8526.9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6.10-8526.9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9	35
8527.11- 8527.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7.11-8527.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28.10- 8528.2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8.10-8528.2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5
852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2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5
8530.10- 8530.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0.10-8530.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7	35
8530.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0.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7	35
8531.10- 8531.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간단한 조립부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1.10-8531.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7	35
8531.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1.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7	35
8532.10- 8532.3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2.10-8532.3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35
8532.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2.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33.10- 8533.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3.10-8533.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3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35
853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35.10- 8535.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5.10-8535.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36.10- 8536.9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6.10-853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37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38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3	35
8539.10- 8539.4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9.10-8539.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9	55
8539.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3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40.11- 8540.8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0.11-8540.8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7.2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540.91- 8540.99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간단한 조립제품에서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0.91-8540.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60
8541- 8542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1-854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unmounted chip, die, 혹은 wafer로부터 8541-854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여타 unprogrammed chips로부터 programmed chips로의 변화.	4.2	35
8543.10- 8543.80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3.10-8543.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43.9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544.11- 8544.70	간단한 조립부품에서부터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4.11-8544.7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4	65
8545- 8548	이 그룹내의 다른 小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여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545-854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60
860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1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602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603- 8606	이 그룹내의 하나의 號를 포함하고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3-86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607에 속한 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GRI 2(a)에 다르게 되는 경우는 제외	18	45
8607.11	8607.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GRI 2(a)에 다르게 되는 경우 그 小號의 제품 및 8607.12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607.1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9	35
8607.12	8607.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GRI 2(a)에 다르게 되는 경우 그 小號의 제품 및 8607.11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607.1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5	45
8607.19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7.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5	45
8607.21- 8607.9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7.21-8607.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813.1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607.21-8607.99에 해당하는 小號의 mounted orake linings & pads로의 변화는 제외	5.5	45
8608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60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609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1- 8705	87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1-87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5	2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706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6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	25
8707	8708.29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의 변화가 GRI 2(a)에 따르게 되는 경우 그러한 변화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5	10
8708.10- 8708.29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10-8708.2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8708.31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3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813.1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708.31에 해당하는 小號의 mounted orake linings & pads로의 변화는 제외		
8708.39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3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8708.40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8.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4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8708.50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8.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5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8708.6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6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8708.70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7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1	25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708.80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8.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8.91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8.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91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8.92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92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8.93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93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8.94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8.9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94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8.99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8.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혹은 US/Mex에 속한 여타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708.9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기본적 변형이 있는 경우]		
8709.11- 8709.19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09.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변화를 제외한 이 그룹외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9.11-8709.19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09.90	8431.20에 속한 小號의 제품이나 8708에 해당하는 호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09.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710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0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711- 8713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14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변화를 제외하고 이 그룹내의 다른 號를 포함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1-871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5	30
8714	6813.1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8714에 해당하는 號의 mounted brake linings 혹은 pads로의 변화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10	30
8715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4	45
8716.10- 8716.80	GRI 2(a)를 따르게 되는 경우, 8716.90에 속한 小號의 제품으로부터 변화를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6.10-8716.8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2	45
8716.90	8709.90 및 8431.49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716.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7	45
8801- 8802	GRI 2(a)를 따르는 8803에 속한 小號의 제품을 제외한 이 그룹외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801-8802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5	30
8803.10- 8803.90	이 그룹내의 여타 小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803.10-8803.90에 해당하는 小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품 목	원 산 지 판 정 기 준	대표관세율	
		MFN	C2
8804- 8805	이 그룹내의 여타 號에 속한 제품을 포함하고 8804-88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6	50
8901- 8903	이 그룹외의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901-8903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2.4	25
8904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904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8905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9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3.7	35
8906- 8907	8903-8905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을 제외한 이 그룹내의 다른 號를 포함하고 여타 號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906-8907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4.2	30
8908	여타 類에 속한 제품으로부터 8908에 해당하는 號의 제품으로의 변화		

南北合作 製品의 第3國市場 進出方案

1994년 11월 일 인쇄

1994년 11월 일 발행

발행처 통일원 교류협력국

☎ 738-7776, 722-8910

인쇄처 진명인쇄공사

통협 94-11-42

< 비 매 품 >